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255-10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Contents

## I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3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 5
-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 6
- 4. 2016년 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 8

## II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9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1
  - 가. 개요 ..... 11
  - 나. 추진 절차 ..... 11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13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15
  -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8
    -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 18
      - (1) 선정 기준 ..... 18
      - (2) 선정방식 및 절차 ..... 18
      -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19
    - 2) 분석평가서 작성 ..... 21
      - (1) 분석평가 지표 ..... 21
      -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22
-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30
  - 가. 개요 ..... 30
  - 나. 추진 절차 ..... 30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31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33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36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	36
(1) 선정 기준 .....	36
(2) 선정방식 및 절차 .....	36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37
2) 분석평가서 작성 .....	39
(1) 분석평가 지표 .....	39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40
<b>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b>	<b>47</b>
가. 개요 .....	47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47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에산 반영 .....	48
라. 추진절차 .....	49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50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52
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54
1) 체크리스트 작성 .....	54
(1) 작성 기준 .....	54
(2) 작성방식 및 절차 .....	54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55
2) 분석평가서 작성 .....	57
(1) 분석평가 지표 .....	57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58
<b>4. 정부홍보사업(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b>	<b>65</b>
가. 개요 .....	65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65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	65
라. 추진체계 .....	66
마. 추진절차 .....	66
바. 세부작성요령 .....	66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	68

◇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및 예시 .....	69
◇ 반영결과 제출서 서식 및 예시 .....	82
5.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84
가. 작성기관 .....	84
나. 제출기한 .....	84
다. 작성내용 .....	84
라. 참고사항 .....	85

### III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95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97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	99
가. 정책개선의 권고 .....	99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9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99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	100

### IV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03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105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105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107
2. 분석평가책임관 .....	108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108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108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109
가. 평가기관의 기능 .....	109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10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	113
가. 개요 .....	113
나. 특징 .....	114
다. 주요기능 .....	115
라. GIA시스템 사용도 .....	116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	120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120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120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121
가. 개요 .....	121
나. 2016년도 교육과정 .....	121
다. 내용 .....	123
라. 교육 관리 .....	123
6. 민관협력체계 구축 .....	125

1. 관련 예시 .....	129
가.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129
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139
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148

2. 관계 법령 .....	15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154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	164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	166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	169
마. 통계법(관련 조항) .....	171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	177
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	180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	180
나.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	181
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	181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사례 .....	182
4.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 .....	183
□ 중앙행정기관 .....	183
□ 광역자치단체 .....	186
□ 기초자치단체 .....	190
□ 시·도교육청 .....	192
5.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193
가. 국내 사이트 .....	193
나. 해외 사이트 .....	19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4. 2016년 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1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 : 영 제3조)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 사업 →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실시 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분석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li>•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인 경우)</li> <li>* 정부홍보사업(인쇄물)의 경우 분석평가서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li> <li>• 정책개선 실적 관리</li>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li>•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인 경우)</li> <li>• 분석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는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특정 성별영향 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li> <li>•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li> <li>•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li> </ul>
분석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li> <li>• 종합분석보고서 공표</li> </ul>

## 3

##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 정책개선 실적관리(법 제12조 관련)

## (1) 개선의견 반영계획 관리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을 대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확인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
    -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반영계획 관리 메뉴 이용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중 하나를 체크하고 확인 후 과제별 수용 항목 및 불수용 사유 등을 GIA시스템에 입력하여야 과제가 종료됨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개선항목 수가 아닌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항목 수를 의미함(1개 과제에서 여러 개의 개선항목 나올 수 있으며, 수용한 항목 수만큼 표시)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2) 개선실적 재점검

## 【중앙행정기관】

-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완료가 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 현황을 점검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예정
- (2차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4년 개선 예정과제에 대해 시행
  - 2014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예정이라고 한 정책을 대상으로 ‘2015년 기관별 종합 결과보고’에 개선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 기존 미완료과제 재점검

대 상	제출 방법
2013년 개선 미완료과제	2013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2012년 개선 미완료과제	2012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완료가 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 현황을 점검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예정
- (2차점검)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 개선 예정과제에 대해 시행
  - 2014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예정이라고 한 정책을 대상으로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개선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1)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제출(영 제6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자세한 내용은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5.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부분 참조

## (2)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 4 2016년 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연 중	<p><b>[각 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법령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li> <li>- 실시시기 : 관계부처/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 실시</li> </ul> </li> <li>• 정부홍보사업(인쇄물)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 포스터</li> <li>- 실시시기 : 포스터 시안 확정 전</li> </ul> </li> <li>•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li> <li>- 실시시기 :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li> </ul> </li> </ul> <p><b>[여성가족부 &amp; 각 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li> </ul> </li> </ul>
1월중	<b>[지방자치단체]</b> 정부합동평가 실적 보고
2월말까지	<b>[각 기관]</b>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3월말	<b>[여성가족부]</b>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4월말	<p><b>[중앙행정기관]</b> 사업에 대한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을 대상</li> <li>* 가급적 신규과제 30% 발굴</li> </ul>
정기국회 이전	<p><b>[여성가족부]</b>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종합 분석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li> <li>-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li> </ul>
8월말까지	<p><b>[지방자치단체]</b>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li> <li>*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li> </ul>
10월(예정)	<p><b>[여성가족부]</b> 제11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선정된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수사례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li> </ul>
12월(예정)	<b>[여성가족부]</b>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개최
12월말	<p><b>[여성가족부]</b>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통보</p>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4. 정부홍보사업(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  
\* 해당 법령안의 관계 부처 협의 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  
\* 해당 자치 법규안의 관계 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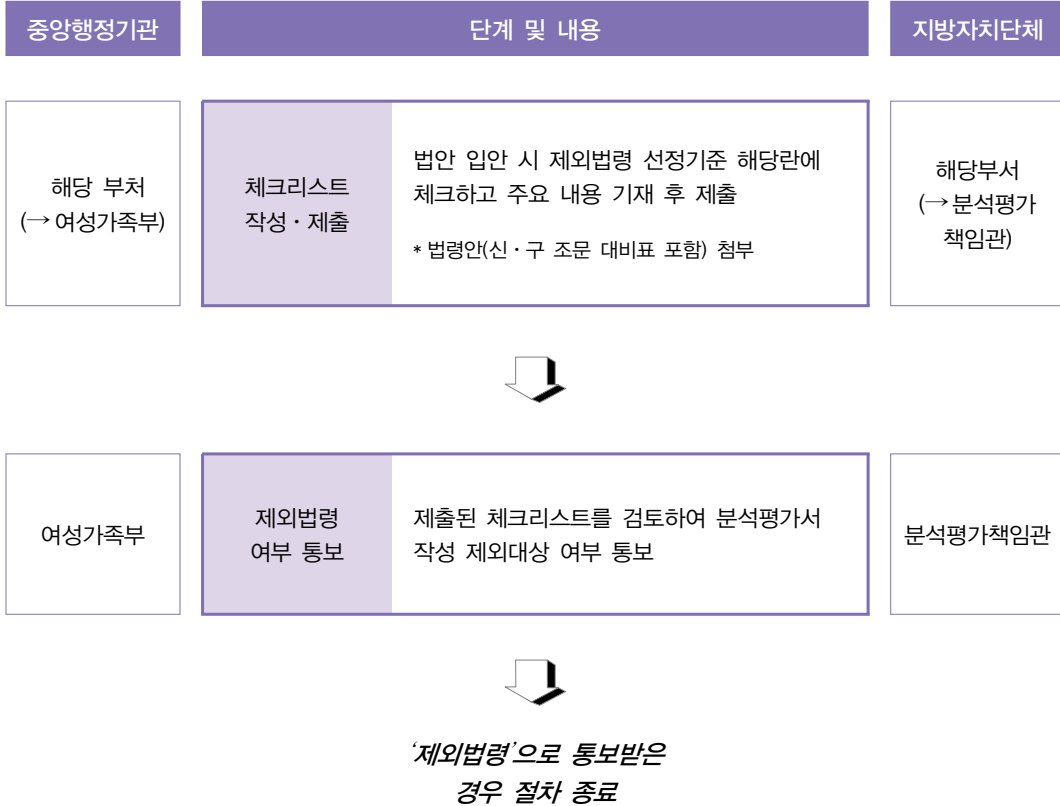
#### 나.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법령) →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에 관한 법령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전시 관련 법령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및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제외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법령)인 경우



- \*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법령(제외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법령’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 (2)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법령)인지 여부를 통보
- 체크리스트에 대해 ‘제외법령’ 통보
  - **(제외법령 통보)** 해당 법령안이 제외법령임을 확인·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제외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해당기관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법령’ 참조(p.15)
-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부처(부서) 협의 시 체크리스트 및 분석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제외법령인 경우 '제외통보'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앙 : 법제처 심사 전까지 * 지자체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b>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b> 및 관리	분석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는 반영계획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관회의에 상정 불가

####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법령안이 제·개정 되었는지를 지속 관리

##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 (1) 선정 기준

- 법령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 다만 제·개정되는 부분이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법령은 체크리스트만 작성

선정 기준	
제외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에 관한 법령</li> <li>□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li> <li>□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li> <li>□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li> <li>□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li> <li>□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li> <li>□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li> <li>□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li> </ul> </li> <li>□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li> <li>□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li> </ul>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6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 (2) 선정방식 및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제외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만 제출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통보
- ‘제외통보’를 받은 경우 분석평가 절차를 종료하고,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작성 서식(기관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6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년 월 일

##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부분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기재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에 대해 3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b>예</b>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혼·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혼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li> <li>•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b>예</b>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표현하는 규정은 '자-손자'로 표현되는 <b>부계혈통주의</b>에 입각한 <b>우리 사회의 성별고정관념</b>을 드러냄</li> <li>• 특정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b>예</b>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b>상시여성근로자</b>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b>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b>이라는 고정관념 반영</li> <li>•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b>예</b>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li> </ul>
II.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li> </ul>
III. 성별 균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li> </ul>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I. 개 요

■ 제·개정 목적

○

○

■ 제·개정 주요 내용

○

○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 해당 항목에 ■ 입력 후 '있음' 일 경우 우측 기술란 입력)

분석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 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 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② 성별 특성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해당 조항>

- 위 표 '관련 조항 유무'에 하나라도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그 해당조항을 자세히 기술
  - 위 표 '관련 조항 유무'에 모두 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시
- \* 분석평가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각각에 대해 작성

#### 2.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 및 근거를 작성
-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 및 분석근거를 작성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기관/ 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조항이 3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하고 필요성 및 분석 근거란에 그 근거도 함께 기재
  -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
- 해당 여부란에 해당 여부를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란에 관련 조항을 모두 기재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간단히 점검하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 'I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에 자세히 기술

### I. 개요

- 제·개정 목적
  -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 제·개정 내용
  -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점검포인트 별로 해당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및 그 개선안에 대해 간략히 기술

####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1-1. 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남녀)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 \* 예시 :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를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 1-2. 해당여부 표시

- 점검 포인트에 하나라도 해당 시 ‘있음’에 체크하고 우측 열로 이동
- 점검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경우 ‘없음’에 체크하고 종료

### 1-3. 해당조항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조항 기술

### 1-4.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 ‘있음’에 체크하는 경우
  - 성별 구분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성별 구분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 필요 있는 경우**
  - \* 성별 구분 조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고, 차별을 유발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신청서 양식의 성별 구분은 불필요한 성별 구별을 통해 차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기술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나,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인 경우 해당조항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 필요 있는 경우**
- 관련조항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 삭제 및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 후 종료

### 1-5~6 개선안 및 개선안 기술

- 성별 구분 조항이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개선안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개선안 기술
  - 개선안 없으면 이유 기술하고 종료



- 성별 고정관념 조향이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개선안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개선안 기술
  - 개선안 없으면 이유 기술하고 종료

## 2 성별 특성

### 2-1. 점검포인트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 또는 시설 설치, 통계·실태 조사 등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 2-2. 해당여부 표시

- 점검 포인트에 하나라도 해당 시 '있음'에 체크하고 우측 열로 이동
- 점검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경우 '없음'에 체크하고 종료

### 2-3. 해당조항

- 분석평가 항목 중 성별특성과 관련한 해당조항 기재

### 2-4.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 '있음'에 체크하는 경우
  -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조항 등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
    - \* 예시 : 사회보험제도에서 최소기여기간을 늘려 급여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차이 또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예 : 연령, 종교, 인종,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준, 신체적 조건)을 언급하면서, 성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관련조항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 삭제 및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 후 종료

## ②-5~6. 개선안 및 개선안 기술

- 성별 특성 조항이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개선안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개선안 기술
  - 개선안 없으면 ‘이유 기술’하고 종료

## ③ 성별 균형 참여

### ③-1. 점검포인트

-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점검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③-2. 해당여부 표시

- 점검 포인트에 하나라도 해당 시 ‘있음’에 체크하고 옆열로 이동
- 점검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경우 ‘없음’에 체크하고 종료

### ③-3. 해당조항

-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조항 작성

③-4.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 ‘있음’에 체크하는 경우
  -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관련조항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③-5~6. 개선안 및 개선안 기술

-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이 있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개선안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개선안 기술
  - 개선안 없으면 ‘이유 기술’하고 종료

I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해당 조항>

- 위 표에서 관련 조항 유무에 하나라도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그 해당조항을 자세히 기술

2.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작성
-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개선안을 아래 표에 작성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 2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
  - 각 기관은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영 제4조)
    - \* 「V. 참고자료」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 첨부
    - \*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명칭하는 계획에 대해 작성
-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재점검(\* 중앙행정기관 대상)
  - \* 자세한 내용은 p. 92참조

## 나. 분석평가 시기 및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분석평가 시기
  - 신규 수립인 경우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재수립인 경우 재수립 시작 단계 1개월 전 전년도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계획)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계획 수립안 마련 시 제외계획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계획안 첨부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제외계획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분석평가책임관



**'제외계획'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계획(제외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 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계획안 마련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2) 제외계획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계획안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계획)인지 여부를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체크리스트에 대해 ‘제외계획 통보,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구분하여 통보
  - (제외계획 통보) 해당 계획안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제외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첨부하여 제출  *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제외계획인 경우 '제외통보'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계획 확정 전까지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b>여부를 확인</b> 및 관리	분석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 분석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는 ‘제외계획’이면 제외 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계획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4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계획을 지속 관리

##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 (1) 선정 기준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이 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제외 계획 및 대상계획 예시

제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li> <li>-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li> </ul>
------	---

#### (2) 선정방식 및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제외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만 제출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체크리스트와 계획안을 검토하여 ‘제외계획’ 여부를 확인 통보
- ‘제외통보’를 받은 경우 분석평가 절차를 종료하고,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작성 서식

####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	재수립( )차 (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관계기관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 일간)			
	계획안 마련	~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년 월 일

## 작성 요령

- 수립하는 계획이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대상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없이 체크리스트만 제출
  - 제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분석평가서 작성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5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li> </ul>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ul>
II.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 (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 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음)</li> </ul>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li> </ul>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 과제 등을 의미

##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작성 서식

####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 I. 개요

■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

○ ※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 해당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

○ ※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 I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해당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분석 근거>

○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계획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① 성별 요구도

※ 아래 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2-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②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 : \_\_\_\_\_ \* (계획 관련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 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 법령 반영 계획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명과 법령의 개선 계획을 기재
- ※ 사업 또는 과제 반영 계획인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명과 개선 계획을 기재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b>기관/부서명</b>				
<b>부서장</b>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b>담당자</b>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 요령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별 형평성은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으로 체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작성

## I. 개요

-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 기술
-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 기술

## I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를 보고 해당 계획이 하나라도 해당시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 1 성별 요구도

#####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남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성별 형평성

#####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계획 수립 시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반영완료 사항에는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관련 법령, 사업 등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4.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3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 중앙 : 4월말까지, 지자체 : 8월말까지(\*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분석평가의 취지를 살려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 사업 선정 시 제외하고, 수혜 격차가 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선정 필요

\*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6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최소 '15년 과제수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신규과제 30% 이상 발굴)
  - \* 20개 이상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한 기관은 적용 제외
  - 국정과제 중 '16년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 중 지속적으로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단, 양성평등기본계획 사업 제외)은 반드시 선정
  - \* 여성가족부에서 추후 통보 예정,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사업으로 작성 가능(단, 사업명은 단위사업명 기재)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17년 예산안)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6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각 부처 기관담당자가 대상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선정 기준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li> <li>□ 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li> <li>□ 정책(사업) 수혜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li> <li>□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li> <li>- 고용, 복지, 안전, 시설설치, 개선 사업</li> <li>*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사업,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신도시조성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빈곤층 자원사업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 정책(사업)</li> <li>□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li> <li>□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li> <li>□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법 제9조 및 영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은 비예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두 예산사업임

예) 2015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한 예산 사업 : 2016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 계획서) 작성 →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하여야 함(2016년 2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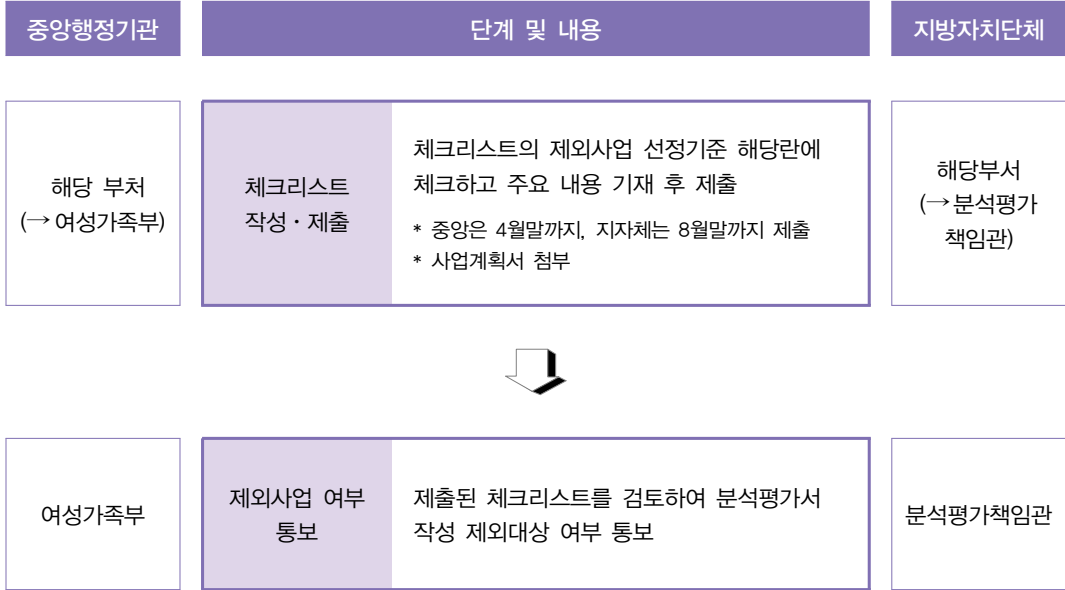
## 라.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사업)인 경우



### '제외사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사업(제외사업)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 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사업'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체크리스트만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8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2) 제외사업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제외사업)인지 여부를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검토결과에 따라 '제외사업 통보,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구분하여 통보
  - (제외사업 통보) 해당 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제외사업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사업' 참조
-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중앙은 4월말까지, 지자체는 8월말까지 제출 * 사업계획서 첨부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제외법령인 경우 '제외통보'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 책임관)
↓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분석평가책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8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사업의 내용, 수행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여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사업 지속 관리

### 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 체크리스트 작성

##### (1) 작성 기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li> <li>-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li> </ul>

\* 각 기관은 분석평가 사업대상 선정 등을 위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필요

##### (2) 작성방식 및 절차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 체크리스트의 정책분야에 정부 B.R.M.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분야 체크

###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작성 서식

###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구분1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구분2	분석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 )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사업의 성격	예산사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산 사업(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사무 구분 *지자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고유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고유사무			
정책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 <input type="checkbox"/> 농림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 관광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산업·통상·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환경				
선정근거 * 중앙행정 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지시사항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진근거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년    월    일

## 작성 요령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주요 내용 작성
- 정책 분야에서 사업의 해당분야에 따라 선택
  - \* 중복선택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
  - \*\* 정책 분야 선택 시, 정책 분야별로 분석평가 지표에 대한 점검포인트 제시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체크리스트에 기재한 해당정책분야에 따라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점검포인트 제시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ul>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li>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히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li> </ul>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li> </ul>
	4.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5.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li> </ul>

##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작성 서식

####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에서 작성 시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분야별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 포인트가 제시 → 점검 포인트 참조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 사업명 :

#### I. 개요

##### ■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 ■ 추진 근거

○

#####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5년(A)	2016년(B)	증감(B-A)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① 성별 요구도

※ 아래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② 사업의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_\_\_\_\_ \*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명	명	%	명	명	%
여성(비율)	명(%)	명(%)	%	명(%)	명(%)	%
남성(비율)	명(%)	명(%)	%	명(%)	명(%)	%

\* 통계출처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4년	2015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 요령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별 형평성은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으로 체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작성
- 분석항목에 대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포인트를 참고하여, 작성

## I. 개요

### ■ 사업 목적

- 해당 사업의 목적 기재

### ■ 추진 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 ■ 주요 사업 내용

-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I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 1 성별 요구도

####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남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 도출
  -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성별 형평성

###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반영완료 사항에는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
  -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 \* 예시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반영완료 사항에는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4. 법령(지침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선 계획을 작성

#### 5.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 반영 계획을 작성

####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 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의 개선 계획을 작성

## 4 정부홍보사업(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정부홍보사업 중 홍보물의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분석평가 추진
    - \* 정책홍보사업(홍보물) 우수사례를 차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에 반영
    - \* 연 2회 분석평가 추진결과 점검

###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쇄홍보물
  - 2016년도는 포스터,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인쇄홍보물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

###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 등장인물의 구성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 지상주의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라.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는 정책홍보사업 분석평가서식을 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운영하여 분석평가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홍보물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

주체	역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지침) 보급, 모니터링 추진, 분석평가결과 대외 공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자문단(컨설턴트) 구성·운영, 종합평가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사도)	분석평가 실시, 컨설팅 활용, 분석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마. 추진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인쇄홍보물을 만드는 담당 공무원이 GIA 시스템에서 인쇄홍보물 분석평가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p. 67 참조

## 바. 세부작성요령

- 정부홍보물 분석평가는 점검포인트로 구성된 분석평가서 해당 항목 점검으로 종료
- 점검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자체개선 추진
  - GIA시스템의 정부인쇄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화면에서 ‘컨설팅 요청’을 클릭하면 컨설턴트에게 전달 → 컨설턴트가 확인 후 검토의견 통보 → 여가부에서 공문으로 컨설팅 결과 통보
- 컨설팅을 요청한 사업담당자가 컨설팅 결과에 대해 반영/미반영 여부 입력 후 종료



## 정부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분석평가책임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분석평가서 배포</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정부홍보물에 대한 분석평가서식 배포                      * 각부서, 소속기관에 분석평가서 배포(붙임4-4)                 </div> </div>	분석평가책임관
해당 부서 사업담당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분석평가서 작성</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정부홍보물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 홍보물 시안 결정전에 GIA시스템을 통해 점검                 </div> </div>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자체개선 및 컨설팅 요청</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개선사항이 없으면 분석평가 종료                      개선사항이 있으면 '컨설팅 요청' 또는 '자체 개선'                      *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요청하되 홍보물 시안 결정 전에                      홍보물 시안을 첨부하여 G.I.A.시스템을 통해 요청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가 컨설팅 실시                 </div> </div>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small;">                         * 홍보물 시안 용량이 큰 경우 메일                          hongbogja@kwdimail.re.kr로 송부                          * 문의 : 02) 3156-7229                     </div> </div>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통보</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컨설팅 결과 통보(7일 이내)                 </div> </div>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컨설팅 결과 반영</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검토의견(컨설팅) 통보 후 사업담당자는 '반영',                      '미반영' 체크 후 종료                 </div> </div>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분석평가책임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c6c8ca; padding: 5px; width: 15%;">반영결과 관리</div> <div style="padding: 5px; width: 70%;">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반영여부 확인                      및 점검                      * 상·하반기 2회 점검(여성가족부)                      * 최종결과는 익년 종합분석결과보고서에 반영·제출                      (분석평가책임관)                 </div> </div>	분석평가책임관

##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 (기관명) 인쇄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분석평가 항목	점검	점검포인트(예시)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li> <li>▶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li> <li>▶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li> <li>▶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 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li> <li>▶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li> <li>▶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li> </ul>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점검포인트 예시는 GIA시스템에서 점검포인트별로 커서를 대면 구체적인 예시가 별도 창으로 구현됨			종료 ▶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붙임 1-2**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개선사항 없음 - 지자체)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붙임 2-1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자체개선안 동의 - 중앙)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성가족부장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붙임2-2**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자체개선안 동의-지자체)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붙임 3-1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개선의견 - 중앙)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기관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성가족부장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붙임 3-2**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개선 의견 - 지자체)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법령 ○○○안」 검토의견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 검토 의견〉 참조</p>

붙임 3-4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붙임 서식 (계획)

「○○○○○○○○○○ 계획」 개선의견

구 분	개선필요항목(해당페이지)	검토사유
	개선의견	
계획 과제 개선		〈종합 검토 의견〉 참조
관련법령 (지침) 개선		
관련 사업 개선		

「○○○○○○○○○○ 사업」 개선의견

구 분	해당사업 개선의견	검토사유
<p>법령개선 (지침 포함)</p>	<p>①</p> <p>②</p> <p>③</p>	
<p>예산반영</p>	<p>①</p> <p>②</p> <p>③</p>	<p>&lt;종합 검토 의견&gt; 참조</p>
<p>사업내용 및 수행 방식 등 개선</p>	<p>①</p> <p>②</p> <p>③</p>	

**붙임 4-1**

## (기관명) 인쇄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분석평가 항목	점검	점검포인트(예시)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점검포인트 예시는 GIA시스템에서 점검포인트별로 커서를 대면 구체적인 예시가 별도 창으로 구현됨

종료 ▶

## (GIA) 인쇄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분석평가 항목	점검	<p><b>(click ▶)</b>  <b>주역할</b>(여성은 가사와 육아 돌봄 등 집사람, 남성은 직업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b>직업</b>(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b>취미</b>(여성은 음악이나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b>비용 부담</b>(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등</p>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분석한다.			
성역할 고정관념	<input type="checkbox"/> 없음	▶ <u>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있음	▶ <u>‘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p><b>(click ▶)</b>                  미망인, 김치녀, 된장녀, 출가외인, 삼일한, 남성은 울지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압탕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p>		<p><b>(click ▶)</b>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양전하고, 남성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p>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 <u>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있음	▶ <u>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u>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성차별적으로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p><b>(click ▶)</b>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쪽쪽빵빵 등</p>		<p><b>(click ▶)</b>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로,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을 희화화</p>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 <u>부부, 연인, 친구 등 가 가정하고 있는가?</u>  ▶ <u>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u>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종료 ▶</div>			

붙임 4-3 컨설턴트 검토의견 통보서

### 인쇄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평가 항목	개선필요	해당부분		개선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 인쇄홍보물 양성평등한지 점검해봐요!

분석평가 항목	점검	점검포인트(예시)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문의 : 02) 3156-7229

메일 : hongbogia@kwdimail.re.kr

붙임 5-1 반영계획서 서식(중앙)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 제시한 개선의견을 요약			
검토의견 반영 계획 (제출부처명)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작성			
년    월    일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5-2 반영계획서 서식(지자체)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b>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분석평가책임관이 해당 부서에 제시한 개선의견을 요약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부서명)	*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해당부서가 어떻게 반영할지를 작성			
년    월    일  ○○○부서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 5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법 제9조, 영 제6조)

### 가. 작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제출 기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다. 작성 내용

-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
  - 법령·계획·사업별 분석평가 추진 현황
  - 법령·계획·사업별 주요개선실적 및 향후개선계획
  - 분석평가를 통한 자체개선사례
  -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 개선실적 재점검

		점검 내용
중앙행정기관	2차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4년 개선 예정과제에 대해 시행 - 2014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예정이라고 한 정책을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3차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 개선 미완료과제에 대해 시행 - 2013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를 작성
	4차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2년 개선 미완료과제에 대해 시행 - 2012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2차 점검	2014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예정이라고 한 정책을 대상 개선결과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라. 참고사항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시 반영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충실성’은 우수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할 예정
  - 우수사례는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서식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소관 부서	기 관 명		
	작성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 I.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1. 제외대상					
2. 원안동의					
3. 개선의견					
평가 대상	반영결과	계			
		수 용			
		불 수 용			
		일부수용			
		중 단			
4. 기타(미완료 등)					

- \* ①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            건  
 ②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            건  
 ※ ①+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  
 ③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한 분석평가 사업 수 :            건  
 ※ ③은 ①의 건수와 같아야 함, 다른 경우 그 사유 명기(ex : 00개 사업 예산 편성 시 폐지됨)

□ 총평

○ 잘된 점

(작성예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확립
  - \* 조례제정, 예산배정, 전담기관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BSC반영 여부 등을 위주로 작성
- 고위자 및 중견 관리자 교육 강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주로 작성

○ 미흡한 점

(작성예시)

- 실질적인 정책개선 미흡(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미흡)
- 교육의 인원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분석평가 교육 미흡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미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미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미흡

II.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 법령

순번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 계획

○ 계획

순번	계획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 사업

순번	사업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 Ⅲ. 정책개선현황(자체개선사례)

○ 법령

순번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계획

순번	계획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사업

순번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Ⅳ. 개선실적 재점검

(2차점검) 2014년 정책개선 예정과제 대상

○ 계획

순번	계획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사업

순번	사업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순번	과제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3차점검) 2013년 정책개선 미완료과제 대상(\*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계획

순번	계획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사업

순번	사업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순번	과제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4차점검) 2012년 정책개선 미완료과제 대상(\*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계획

순번	계획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사업

순번	사업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순번	과제명	당초 개선 계획	개선 실적

## V. 정책개선 우수사례\*

\* 정책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준

① 성평등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선정, ② 분석평가서 작성의 우수성( 분석평가 지표의 이해도, 성인지 통계의 활용 여부, 성인지 예산서와의 연계 정도)을 고려하여 선정

사례 1(정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

주요 내용

- 
- 

주요 정책 개선 내용

- 
- 
- 

사례 2(정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

주요 내용

- 
- 

주요 정책 개선 내용

- 
- 
- 

※ 사례 추가 가능

붙임자료 :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 I.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 전체 : 제외대상 + 원안동의 + 개선의견 + 기타(중단 등) 건수의 합계
  - \* GIA시스템 > 종합현황판 > 분석평가 현황 > 총괄의 기관별 총계와 일치하여야 함
  - 제외대상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분석평가 종료
  - 원안동의 : 검토의견 통보 결과 '원안동의'인 건수
  - 개선의견 :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의견'인 건수
- 반영결과
  - 반영결과 계 : 개선의견의 건수와 일치하여야 함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 GIA시스템 > 종합현황판 > 분석평가 현황 > 개선 현황 > 반영결과의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에 대한 기관별 결과와 일치해야 함
- 기타 : 검토의견 미통보 등의 사유로 분석평가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의무화에 따른 현황 표기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와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한 분석평가 사업 수는 일치하여야 함

### □ 총 평

- 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

## II. 정책 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인 과제)

- I. 분석평가 추진 현황\_총괄표 상의 개선의견 반영결과가 수용 또는 일부수용인 과제를 모두 작성(\*불수용은 제외)
  - \* 법령·계획 : 당해 연도에 반영된 실적
  - \* 사업 : 중앙행정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1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된 실적

- 주요 개선실적 :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이 완료된 실적  
향후 개선계획 :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개선할 예정인 내용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 Ⅲ. 정책 개선 현황(자체개선사례)

- 해당 기관/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작성
  - \* GIA시스템>종합현황판>분석평가 현황>자체개선사례 결과와 일치되게 작성
- 분석평가 실시 전 : 해당 정책의 성평등 문제점 등을 작성  
분석평가 실시 후 :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한 실적을 작성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 Ⅳ. 개선실적 재점검

- (2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 개선 예정과제에 대해 시행
  - 2014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예정이라고 한 정책을 대상으로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개선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3차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 개선 미완료과제에 대해 시행
  - 2013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4차점검) 중앙행정기관의 2012년 개선 미완료과제에 대해 시행
  - 2012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제출

## V. 정책 개선 우수 사례

### □ 주요 내용

- 기관별로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기재

\* V. 정책개선 우수사례는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선정의 토대가 됨

### □ 주요 정책개선 내용

- 해당부처/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내용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한 내용을 모두 기재
- 향후 개선계획은 해당부처/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 도출한 개선계획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할 개선 계획을 모두 기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1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법 제10조 및 영 제7조)

#### 가.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나. 대상 정책

- 시행 중인 법령
  - 시행중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

## 다.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 \* 부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참석 가능

##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 대상정책 소관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특정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 권고(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가. 정책개선의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개선 권고 실시
  -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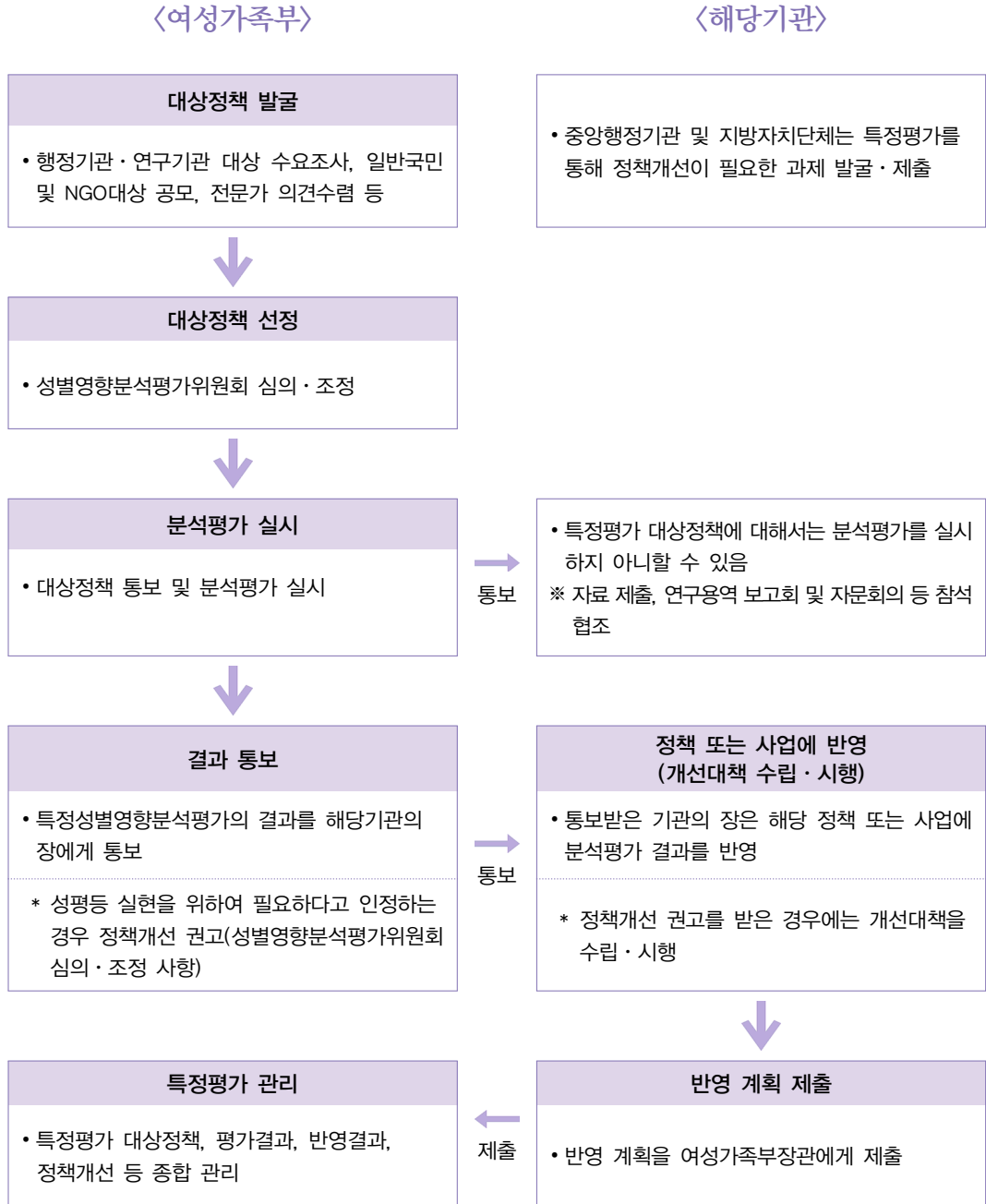
###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특정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정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b>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b>		
관리번호		
정책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대상기관	기관명	
	부서명	
	분석평가 기간	○○○○. ○○. ○○. ~ ○○○○. ○○. ○○.
분석평가의 필요성		
분석평가 주요결과	※ 분석평가서 첨부 가능	
정책개선 권고	권고사항	
	반영계획 제출기한	
	추진실적 제출기한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성가족부장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0000)</p> <p>○○○○    귀하</p>		

<b>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계획</b>		
관리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책명		
소관기관	기관·부서명	
	부서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석평가내용 (요약)	분석평가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통보한 내용을 정리
	정책개선 권고사항	※ 통보된 결과에 정책개선 권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반영계획	분석평가 결과 반영계획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내용을 해당 정책에 반영 계획을 기재
	정책개선 대책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행한 내용 (정책개선 권고 내용과 대응 필요)
<p>년    월    일</p> <p><b>기관명</b></p> <p>여성가족부장관 귀하</p>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 분석평가책임관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6.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1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

#### 가. 설치 및 기능

-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둠

#### 2)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15.1.12.)로 중앙위원회 기능에 포함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영 제11조)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의 분석평가 책임관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 ※ 민간위원 위촉 시 현장활동가 포함

### 2) 임 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의2)

### 가. 설 치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둠

### 나. 기능, 구성 및 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해당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지방위원회는 분석평가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 구성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단, 기존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양성평등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이 큰 경우 분과의 형태로 분석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가능

## 2

## 분석평가책임관(법 제14조, 영 제12조)

##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실적>분석평가책임관 등록 메뉴 이용

##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다음의 사무를 총괄함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가. 평가기관의 기능

###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지역센터 예산·사업배분, 실적 평가·보고·모니터링 등)
  - 센터 미지정 지역 관리 및 지원(인근센터 등에 지정 및 연계)
  - 지역센터 컨설팅지원 및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자문
  - 심층분석 및 정책개선 모니터링 운영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선·개발 지원
  - 제도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우수사례 발표회(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홍보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4) 지정 대상

- 국·공립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 5) 지정 절차



\*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참조

평가기관 지정현황('16. 1월 기준, 16개 지역 총 17개소)

지 역	구 분	기 관 명	지 정 기 간
서 울	중 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5. 10 ~ '18. 5. 9
서 울	지 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5. 11. 5 ~ '17. 12. 31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5. 11. 5 ~ '17. 12. 31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5. 6. 25 ~ '18. 6. 24
인 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6. 1. 10 ~ '18. 12. 31
광 주		광 주 여 성 재 단	'13. 9. 5 ~ '16. 9. 4
대 전		대 전 발 전 연 구 원	'15. 3. 20 ~ '18. 3. 19
울 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5. 5. 21 ~ '18. 5. 20
경 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5. 5. 10 ~ '18. 5. 9
강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3. 6. 1 ~ '16. 5. 31
충 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5. 9. 7 ~ '17. 12. 31
충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5. 10 ~ '18. 5. 9
전 북		전 북 연 구 원	'15. 5. 21 ~ '18. 5. 20
전 남		전 남 여 성 플 라 자	'15. 11. 5 ~ '17. 12. 31
경 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5. 1. 15 ~ '18. 1. 14
경 남		창 원 대 학 교	'15. 3. 20 ~ '18. 3. 19
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 1. 1 ~ '17. 12. 31

## 4

##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 가. 개요

-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
-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제2항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사이트주소 : <http://gia.mogef.go.kr>(행정망 및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  
\* (행정망IP) <http://10.188.131.175>
- 권한구분

그룹	권한	내용
공무원	업무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획, 사업 담당자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반영결과 제출서 작성·제출
	기관담당	해당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총괄 - (공동)기관별 종합결과보고, 교육실적 및 분석평가책임관 현황 등록 - (지자체)검토의견 통보, 반영결과 관리
	운영담당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등
	관리담당	여성가족부의 GIA시스템 관리자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	컨설팅 과제 열람 및 작성
	분석 전문가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 컨설턴트이면서 분석전문가인 경우 분석전문가로 회원가입
	센터담당	센터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 상위 권한에는 하위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무원 : 관리담당 > 운영담당 > 기관담당 > 업무담당
- 외부전문가 : 센터담당 > 분석전문가 > 컨설턴트

## 나. 특 징

- 한글 적용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결과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한글 적용하여 작성, 편집, 다운로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전자결재 연계(결재 단계에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 대상기관
    - 온나라 시스템 사용 기관
    - 서울행정시스템 사용 기관 중 전자결재로 온나라를 사용하는 기관
  - \* 이외의 기관은 GIA시스템 내부결재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 기안 단계에서 '연계기안' 선택 후 온나라에서 결재, 전송하면 GIA시스템의 해당 과제는 자동으로 제출로 상태가 변경됨
  - 해당 기관의 온나라 담당자가 시스템 간 '연계 환경설정'\*을 하여야만 연계 가능
  -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 > 1. 온나라 연계 환경설정 자료 참조
- 앞 단계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체계
  -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 검토의견 통보서 → 반영계획 제출서
  - \* 예) '검토의견 통보서' 작성은 앞 단계인 '분석평가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한 후에 가능하며, '검토의견 통보서'를 일단 작성·저장된 후에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로 클릭하여 이후 절차 진행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GPKI인증서 등록 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요청자		승인권자
모든 업무담당	→	해당 기관의 기관담당
기초자치단체 기관담당	→	광역자치단체 기관담당
광역·교육청 기관담당, 운영담당, 센터담당	→	관리담당
분석전문가, 컨설턴트	→	해당 센터의 센터담당



## 다. 주요기능

- 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 작성·승인 및 제출
  - 반영계획 관리
- GIA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 현황·통계 관리
  - 기간별, 과제별 분석평가 실시현황(총괄)
  - 기간별, 과제별 개선의견 및 반영계획 현황
  -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구분 통계 가능
  - 분석평가책임관 등록 현황
  - 교육실적
  - 컨설팅 실적
  - 종합결과보고 현황 등
- 2009년 이후의 분석평가 자료 조회 가능
  - \* GIA시스템>참여마당>통합검색
- 알림마당, 공유게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제공

## 라. GIA시스템 사용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만 우선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p style="text-align: center;"><b>체크리스트 작성</b></p>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분석평가대기&gt;체크리스트작성</p> <p>- 왼쪽 하단에 있는 <b>체크리스트 작성</b>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하여 작성</p>	업무담당	
	↓		
	<p style="text-align: center;"><b>저장</b></p> <p>※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p>	업무담당	
	↓		
	<p style="text-align: center;"><b>기안</b></p> <p>○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p> <p>○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p>	업무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결재 → 전송</b></p> <p>○ 연계기안을 선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연계됨</li> <li>- 체크리스트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li> <li>-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li> <li>※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li> <li>※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li> </ul> <p>○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p> <p>*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전송대기</p> <p>-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 됨</p>	업무담당	
	↓		
접수	<p style="text-align: center;"><b>접수</b></p>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접수대기</p> <p>○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p>	관리 담당	기관 담당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b>체크리스트 검토</b></p>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분석평가대기&gt;해당 과제의 체크리스트의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 통보' 클릭</li> </ul> </li> <li>○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분석평가서 제출요청' 클릭</li> </ul> </li> </ul>	운영 담당	기관 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b>저장·기안·결재·전송</b></p> <p>※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p>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제외통보 시  
분석평가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리스트 & 분석평가서	<p>*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분석평가대기 &gt; 체크리스트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왼쪽 하단에 있는 <b>체크리스트 작성</b>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li> <li>→ 체크리스트 작성 → 저장 → 분석평가서 작성</li> </ul>	업무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b>저장</b></p> <p>※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p>	업무담당	

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li> <li>○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li> </ul>	업무담당	
----	---	------	--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			
결재 ↓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기안 선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넘어감</li> <li>-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li> <li>-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li> <li>※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li> <li>※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li> </ul> </li> <li>○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전송대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 됨</li> </ul> </li> </ul>	업무담당	
↓			
접수	<b>분석평가서 접수</b>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접수대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는 모두 접수대기로 보내짐</li> <li>○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li> </ul>	관리 담당	기관 담당
↓			
검토 의견 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작성 시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분석평가대기 &gt; 나의과제 &gt; 해당 과제의 분석평가서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검토의견 요청' 클릭</li> <li>-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통보' 클릭하여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li> <li>-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검토의견통보서 작성' 클릭하여 작성</li> <li>* 검토 결과에 따라 왼쪽 상단의 &lt;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gt;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양식 자동 변경됨</li> </ul> </li> <li>○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분석평가대기 &gt; 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div> </li> </ul>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 통보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li> </ul>		
	↓		
	<b>저장·기안·결재·전송</b>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 제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작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분석평가대기&gt;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li> </ul> </li> <li>-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제출서 작성' 클릭</li> <li>○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분석평가대기&gt;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제출서</li> </ul> </li> <li>- 반영계획 제출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li> </ul>		업무담당
	↓		
	<b>저장·기안·결재·전송</b>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페이지 &gt; 나의할일 &gt; 분석평가대기 &gt; 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제출서</li> <li>- 반영계획제출서의 상태값인 '제출' 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왼쪽 상단의 <input type="radio"/> 수용 <input type="radio"/> 일부수용 <input type="radio"/> 불수용 <input type="radio"/> 중단 중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li> <li>- '수용'이나 '일부수용'인 경우 개선항목 수 및 항목 선택</li> <li>- '불수용'이나 '중단'인 경우 그 이유 입력</li> </ul>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gt;분석평가&gt;반영계획관리</li> <li>-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 입력</li> <li>※ 반영계획 확인 및 입력을 하여야만 과제가 종료됨</li> <li>※ 종합현황판&gt;분석평가현황&gt;개선현황에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li> </ul>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컨설팅		분석평가서 검토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b>컨설팅 요청</b>  <b>(업무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서 등의 작성 단계에서 <b>컨설팅 요청</b>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가능</li> </ul>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나의컨설팅&gt;일반컨설팅 요청 버튼 클릭</p>	<b>전문가 검토의견 요청</b>  <b>(기관담당)</b>  *중앙 : 운영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상태값인 '제출'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하단의 <b>전문가 검토 의견 요청</b> 버튼을 클릭</li> </ul> </li> <li>※ 클릭 시 뜨는 메시지창에 검토 요청 내용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 선택, 지자체는 필수입력</li> </ul> </li> </ul>

↓

중앙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자동 요청됨

<b>접수</b>  <b>(센터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를 담당할 컨설턴트 및 분석전문가를 지정</li> <li>* 지정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와 분석전문가가 소속 센터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li> </ul>
--------------------------------	--



<b>컨설팅</b>  <b>(컨설턴트)</b>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컨설팅 대기</p> <p>컨설팅 내용을 작성하고 컨설팅 실적을 등록</p>	<b>전문가 검토</b>  <b>(분석전문가)</b>	<p>* 나의페이지&gt;나의할일&gt;분석평가 대기</p> <p>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작성 후 기안 → 센터 내 결재자가 수정 및 제출</p>
---------------------------------	---	---	---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1566-3287, 02-3789-4450)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에 탑재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실시 및 참여를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각 기관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여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 반영됨

### 나. 2016년도 교육과정(여성가족부 주관)

- 여성가족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교육수요 조사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b>총계 15개 과정</b>					
기본 교육	<b>소계 3개 과정</b>				
	관리자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	3월, 6월 8~9월
		고위정책과정(4급 이상)		중앙 및 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	3~4월 6~7월
		관리자과정(5급)		중앙 및 지자체 5급 공무원	3~4월 6~7월, 10월
	<b>소계 6개 과정</b>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통합교육	1일 과정	중앙 및 지자체 분석평가 기관담당 공무원	5월, 9월
			2일 과정		11월
		사업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중앙 공무원	4~5월
		사업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기본교육	지자체 공무원	5~11월
			실습형교육		
	법령 및 계획 관련 업무담당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2~4월 9~12월	
	<b>소계 2개 과정</b>				
	성인지 예·결산 교육	성인지결산 사업담당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1월, 3월
		성인지예산 사업담당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5월, 9월
	전문 교육	<b>소계 3개 과정</b>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기본과정		컨설턴트	2월, 9월, 11월
		컨설턴트 양성과정		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 희망자	4월
	컨설턴트 심화과정		컨설턴트	6월	
워크숍	<b>소계 1개 과정</b>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 워크숍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센터	12월	
순회 교육	<b>소계 1개 과정</b>				
	찾아가는 순회교육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공무원 등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다. 내 용

- 당해연도 분석평가 추진방향 및 지침 이해
- 분석평가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 이해
-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 정책·예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작성
- 사업유형별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등

## 라. 교육 관리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교육을 총괄하며, 매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적 제출시기
  - 상반기(1.1.~6.30.) 교육실적 : 해당연도 7월말까지 제출
  - 연간(1.1.~12.31.) 교육실적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실적>교육실적 메뉴 이용

○ 교육실적 제출서식

기관명	구분	교육인원(명)						교육참석 여부 (○, ×로 표기)					
		소계			5급 이상		6급 이하 (기타)		분석평가 책임관		기관담당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	-	-	-
	자체교육 (기관입력)												
	위탁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찾아가는 순회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기타교육 (기관입력)												

- \* 합 계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교육, 기타교육 참석 인원을 모두 합한 인원  
(ex. 3회 실시한 교육에 총 100명이 참석하였다면 합계는 100명)
  - \* 자체교육 :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등으로 실시한 교육(강사초빙, 내부강사 활용 가능)
  - \* 위탁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 찾아가는 순회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 기타교육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이외의 교육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우수사례 발표회 등
- ※ 분석평가책임관과 기관담당이 교육에 참석한 경우 교육참석 여부에 ○ 표기하고 해당직급(5급 이상, 6급 이하)에 인원 수 추가

## 6

### 민관협력체계 구축(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앙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참여, 과제 선정 시 대국민 공모 실시, 시민 제안, 시민 참여 모니터링 등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참고자료

1. 관련 예시
2. 관계 법령
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4.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
5.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가.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2015)

## I. 개요

## ■ 제·개정 목적

- 에너지이용권을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 제·개정 주요 내용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정함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2015)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b>해당조항 개선 필요성</b>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② 성별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제13조의2 1.	<b>성별특성 반영 필요성</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제13조의2 제1호의 '수급자 중' '임산부를 포함'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b>성별균형 참여 필요성</b>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 ■ <해당 조항>

- 제13조의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여부

#####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임산부는 모성보호,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하여 건강과 관련되는 거주환경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에너지이용권의 수급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에너지 소비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여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정은 사정이 더 안좋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임산부를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정책 추진할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한 가계빈곤화 예방 및 빈곤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노인,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p>	<p>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_____                      _____노인·임산부·영유아                      _____</p>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 I. 개요

#### ■ 제·개정 목적

-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 제·개정 주요 내용

- 법률의 한글화, 일제식 한자어·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

###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 제772조, 제781조, 제846조, 제908조의2 등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자, 양자, 친생자, 친양자 등 용어는 양성 평등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 보아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친양자녀 등으로 용어를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② 성별 특성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다?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다?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b>성별특성 반영 필요성</b>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b>성별균형 참여 필요성</b>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 <해당 조항>

○ 第772條(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中の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 養子の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の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 寸數를 定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第846條(子の 親生否認) 夫부의 일방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여부

####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자, 양자, 친생자, 친양자 등 용어는 양성 평등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 보아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친양자녀 등으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第772條(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 中の 出生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 養子の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の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 寸數를 定한다.	제772조[양자녀(養子女)와의 친족관계와 촌수] ① 양자녀와 양부모,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 간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녀의 배우자, 양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第846條(子の 親生否認) 夫부의 일방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제846조[자녀에 대한 친생부인(親生否認)] 제844조의 경우에 부부 중 한쪽은 그 자녀가 친생자녀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 개 요

### ■ 제·개정 목적

- 서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부·처·청 등)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의 크기에 있어 남·여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제·개정 주요 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개정)
  -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확대함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삭제)
  -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1등급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의 남성용·여성용 구분을 폐지하여 현재의 남성용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li> <li>□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li> <li>□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li> <li>□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종료)</li> </ul>	제13조 제1항	<p><b>해당조항 개선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여성용 훈장 관련 별표 3 삭제
②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li> <li>-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li> <li>-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li> <li>-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종료)</li> </ul>		<p><b>성별특성 반영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③ 성별 균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li> <li>-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li> <li>-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종료)</li> </ul>	제2조 제1항	<p><b>성별균형 참여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li> <li>□ 없음 (이유기술, 종료)</li> </ul>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 1. 성별 구분

##### 가. 성별 구분 조항

- 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여성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나. 구분 개선 필요성

- 상훈법시행령 제정 당시 남·여의 체구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용과 여성용 훈장의 크기를 달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여성의 체구 등 상황변화에 따라 남·여 차별로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2. 성별 균형 참여

##### 가.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구분 개선 필요성

-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u>다만, 여성용 훈장으로서는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u></p> <p>②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lt;삭제&gt; * 별표 3도 함께 삭제</p> <p>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li> <li>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li> <li>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li> <li>4.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li> </ol>



## 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경찰청)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제1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I. 개요

##### □ 비전과 목표

- 비전 : 자랑스러운 경찰, 행복한 가정, 안전한 국민
- 목표 : 경찰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 향상으로 경찰의 사기 진작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증진한다.

##### □ 전략 및 중점과제

대과제	중과제	세 부 과 제
직업 복지	보수·수당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수당체계 합리화
	안정적 주거마련	주거마련 지원제도 설계 경찰관사 개선 및 신축
	쾌적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 마련	근무시간 및 근무지 이동기준 합리화 지구대·파출소 단계적 현대화 여경 편의시설 설치
	순직·공상 예우 및 지원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건강 복지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관리 기반조성 건강관리 체계구축
	치유중심 정신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확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용가능 진료체계	경찰병원 특성화 지역병원과 협약 체결
가족 복지	경찰가족의 안녕과 복지	가족관계 개선 지원 일·가족 양립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영·유아 육아지원 초·중·고 자녀 교육지원 대학생 자녀 교육지원
문화·여가 복지	수준높은 문화복지	문화·예술 체험지원 문화·체육 활동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복지	휴양시설 확충 및 개선 휴양시설 제휴 확대

## I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해당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관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근무여건 및 시설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필요성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계획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1 성별 요구도

###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일·가정의 양립 문제가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녀 돌봄은 여성만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13년 복지현황조사에 의하면 여경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경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배려'를 1순위(48.7%)로 응답한 반면, 남경은 3순위(26.4%)에 그침. 또한 원하는 보육지원 형태의 경우, 여경은 직장 보육시설(52.6%), 보육비 지원(39.8%)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보육비 지원(67.6%), 직장보육시설(22.6%) 순으로 응답하여 상호간 요구차이가 존재. 따라서 '일·가족 양립지원' 및 '영유아 육아지원' 과제 추진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13년 복지현황조사에 의하면 여경을 위한 적합한 시설 및 여건 보유정도에 대하여 여경의 34.9%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남경은 28.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여경편의시설 설치' 과제 추진시 이러한 요구차이 반영 필요
- 2-1. 예방중심 건강복지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상 건강검진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바, 동 법령에 기반한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
  -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명시 필요
  - \* 직장여성의 임신 기간 동안 근로환경은 미숙아 및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성이 높으므로(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미숙아 등 출산비율 : 12.2% vs 근로환경이 좋은 경우 2.7%), 미숙아 및 저체중아 관련 산전·산후 건강검진 필요
  - \*\* 여성경찰관의 우울증은 남성 경찰관의 두배에 달함(여성경찰관 18.1% vs 남성경찰관 7.6%)
  - 일본의 PTSD의 고위험군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0~20%p 높다는 결과(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 비교, 연세대 2013)

## 2 성별 형평성

###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주로 경찰공무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인프라 개선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혜의 형평성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여경은 '13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원 102,713명 중 7,817명(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남성위주 시설물 설치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설치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

#### □ <해당계획 개선안>

- 여경은 물론, 남경의 육아휴직 확대와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여타 기관과의 보육서비스 공유 사업과 관련된 과제 보완
- 건강·질병연구 수행시 '성별' 고려 규정 명시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경찰 직무특성에 맞는 독자적 건강검진 체계 구축 - 건강검진을 채용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등으로 구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시 건강검진 : 경찰공무원 채용시 일정 자격 확인을 위한 검사</li> <li>▶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li> <li>▶ 배치 전 건강검진 : 첫 배치시 신체·정신의 건강상태 적합 여부 판단</li> <li>▶ 특수건강검진 : 업무분석을 통해 유해인자 및 질병별로 건강진단</li> <li>▶ 수시건강검진 : 직업성 질환을 감지하기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li> <li>▶ 임시건강검진 : 같은 부서 등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증상이 발생시,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경찰 직무특성에 맞는 독자적 건강검진 체계 구축 - 건강검진을 채용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등으로 구분</li> <li>- <b>임사부 및 가임기 여성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시 건강검진 : 경찰공무원 채용시 일정 자격 확인을 위한 검사</li> <li>▶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li> <li>▶ 배치 전 건강검진 : 첫 배치시 신체·정신의 건강상태 적합 여부 판단</li> <li>▶ 특수건강검진 : 업무분석을 통해 유해인자 및 질병별로 건강진단(여경의 모성보호 관련 검사 포함)</li> <li>▶ 수시건강검진 : 직업성 질환을 감지하기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li> <li>▶ 임시건강검진 : 같은 부서 등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증상이 발생시,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li> </ul> </div>

-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계획 명시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 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없음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을 위한 과제설정 및 영·유아 육아지원, 여경 편의시설 설치에 예산 편성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3~2017)

### I. 개 요

#### ■ 비전과 목표

- 비전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 ■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 영역	중점 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I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안전에 대한 위험도 등 생활환경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① 성별 요구도

###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크게 느끼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성별로 상이함(자료 : 통계청, 2008 사회조사). 따라서 가출, 학교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 추진 시, 여자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완 필요

<성별·연령대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 분		불 안	보 통	안 전
여성	10대 이하	60.8	28.4	10.7
	20대	59.5	29.6	10.8
	30대	56.1	30.8	13.0
	40대	48.1	32.8	19.1
	50대	43.2	32.1	24.6
	60대 이상	34.2	30.3	35.6
남성	10대 이하	31.3	34.1	34.7
	20대	24.2	39.8	36.0
	30대	33.8	40.7	25.4
	40대	33.6	36.2	30.2
	50대	30.3	35.0	34.7
	60대 이상	27.7	30.6	41.6

-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여자청소년(43.5%)이 남자청소년(27.6%)에 비해 외모에 대한 고민 비중이 높으므로(통계청, 2010 사회조사),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

## 2-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여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지원 확대 필요

##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위기 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학습권을 박탈당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미혼모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임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0 사회조사), 우울증상 경험률(여성 19.1%, 남성 7.9%) 및 자살 생각률(여성 21.7%, 남성 8.5%)도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성별로 상이하므로(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② 성별 형평성

###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 <분석 근거>

- 관련통계 : 청소년(9~24세) 현황\*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10,359,681명	10,359,681명	10,197,036명	10,197,036명
여성(비율)	4,894,924명(47.2%)	4,894,924명(47.2%)	4,817,063명(47.2%)	4,817,063명(47.2%)
남성(비율)	5,464,757명(52.8%)	5,464,757명(52.8%)	5,379,973명(52.8%)	5,379,973명(52.8%)

\* 통계출처 : 통계청, 장애인구추계(2011)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및 수혜자의 경우 여성 47.2%, 남성 52.8%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에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내용 추가하여 반영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반영 완료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 관련 여자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 반영 계획</li> <li>•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관련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지원 확대 방안 반영 계획</li> <li>•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 관련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방안 반영 계획</li> </ul>

## 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예시

###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농업인대학 운영

#### I. 개요

##### ■ 사업 목적

○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 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

#####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당 1~3개 과정을 개설하며, 6~12개월, 100시간 이상의 증장기 심화교육으로 운영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5년(A)	2016년(B)	증감(B-A)
농업인대학 운영	2,173	2,000	△173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있음: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① 성별 요구도

####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type="checkbox"/> 농림부문에 대한 인식 및 경험(농림업 종사자 등록, 경영주 여부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교육 수준의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농촌의 문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농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림업 관련한 정보 활용(전자상거래를 통한 농림산물 판매, 농림업 관련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 차이 발생
-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 개설 및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형태(자기 농림업, 남의 농림업, 자기농림업과 남의 농림업 동시 종사 등)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경지(논, 밭, 개간지, 하천부지, 간척지 등) 소유여부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농가 소득수준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림부문에 종사하는 형태(농림업 전업, 겸업 등)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산물의 판매장소나 판매처(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 수집상, 직접판매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도구(농기계와 저온 저장고, 정보화 기기, 교통수단 등)를 보유하는 데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이 남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 독려 및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한 교육 형태 다양화 필요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림기구 이용 시 만족도, 편의성, 안전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연령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이 많고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 (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 저조
- 식품발효, 생활원예,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식품 등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필요

② 사업의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농업 종사자\*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2,599,176명	12,257명	2,599,176명	13,000명
여성(비율)	1,338,352명(51.5%)	4,355(35.5%)	1,338,352명(51.5%)	4,810명(37.0%)
남성(비율)	1,260,824명(48.5%)	7,902(64.5%)	1,260,824명(48.5%)	8,190명(63.0%)

\* 통계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농가/성별 농가인구)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전체 사업 수혜자 비율에 있어서 여성(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 마련

■ 반영완료 사항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식품발효, 생활원예, 원예치료, 전통식품, 농산물 가공, 발효식품 등) 확대·개설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 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4년	2015년
전체	2,050백만원	2,180백만원
여성(비율)	726백만원(35.4%)	807백만원(37.0%)
남성(비율)	1,324백만원(64.6%)	1,373백만원(63.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사업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인대학 과정을 개설할 경우 사업수혜와 같이 예산수혜에서도 여성의 비율(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및 여성비율 쿼터제(20% 이상) 권고·실시함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분석평가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결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여성 비율, 참여 조건)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컨설팅팀 및 컨설팅 인증위원회 구성)를 보장하는 내용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를 규정할 계획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

#### 5. 예산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분석평가결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결과, 남성과 여성의 농가경영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 농업인 대학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예산 차등화 할 계획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예정

####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해당사업 참여를 위한 물리적 조건(컨설팅 시간,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컨설팅팀이 농가경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가?
- 컨설팅팀 및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해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실시 예정

## 2

## 관계 법령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 률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li> <li>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2.3&gt;</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2.3&gt;</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b></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li> <li>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li> <li>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li> <li>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li> <li>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li> </ol>

법 률	시 행 령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li> <li>2. 성별 수해분석</li> <li>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li> <li>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li> <li>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li> <li>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li> <li>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li> <li>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li> </ol> <p>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p>

법 률	시 행 령
<p>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b>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2.3&gt;</p> <p><b>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4.3.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 중인 법령</li> <li>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li> <li>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li> </ol>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p>	<p>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li> <li>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li> <li>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li> </ol> <p><b>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b>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lt;개정 2015.8.3&gt;</p>

법 률	시 행 령
<p>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설 2015.2.3〉</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5.2.3〉</p> <p><b>제11조(정책개선 권고)</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b>제8조(정책개선의 절차)</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p> <p>[제목개정 2014.9.18]</p>

〈신설 2014.3.24〉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2.3〉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제목개정 2015.2.3]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5.8.3]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률	시 행 령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15.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li> <li>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li> <li>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2.3&gt; [제목개정 2015.2.3]</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2.3&gt;</p>	<p>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8.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5.8.3&gt;</li> <li>2. 삭제 &lt;2015.8.3&gt;</li> <li>3. 삭제 &lt;2015.8.3&gt;</li> <li>4. 삭제 &lt;2015.8.3&gt;</li> <li>5. 삭제 &lt;2015.8.3&gt;</li> <li>6. 삭제 &lt;2015.8.3&gt;</li> </ol>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p> <p>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8.3&gt;</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p>

법 률	시 행 령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5.8.3&gt;</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4.9.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li> <li>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li> </ol> <p>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li> <li>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li> <li>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③ 삭제 &lt;2014.9.18&gt;</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9.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li> <li>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li> <li>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li> </ol>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p>



법 률	시 행 령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제11046호, 2011.9.15.&gt;</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제12530호, 2014.3.24.&gt;</b></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제13178호, 2015.2.3.&gt;</b></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9.18&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p> <p>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 &lt;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gt; (여성가족부 직제)</b></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를 “교육부·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p>



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5616호, 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㉖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제26469호, 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p>	
<p>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 2015.6.22&gt;</p>	
<p>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p>	

법 률	시 행 령
<p>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b>제18조(성인지 교육)</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li> <li>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li> </ol> <p>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li> <li>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li> <li>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li> <li>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li> <li>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li> </ol> <p>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b>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b>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li> </ol>

##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p> <p>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생략</p>	<p>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해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p> <p>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④ 생략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성인지 예산서</p>

법 률	시 행 령
<p>9. 성인지 예산서 10~14. 생략</p> <p>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p>	<p>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li> <li>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li> <li>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p>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 결산의 개요</li> <li>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li> <li>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li> <li>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법 률	시 행 령
<p><b>부 칙</b></p> <p>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p>	<p><b>부 칙</b></p> <p>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p>



## 마. 통계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li> <li>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li> <li>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li> <li>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li> </ol> <p>② 생략</p>	<p>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li> <li>2. 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li> <li>나. 시·군·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i> </ol> </li> <li>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li> </ol>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p>

법 률	시 행 령
<p>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li> </ol> <p>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li> <li>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li> <li>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 활용의 실태</li> <li>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li> <li>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p> <p>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p>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률	시    행    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의 명칭</li> <li>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li> <li>3. 통계작성승인번호</li> <li>4. 통계작성의 목적</li> <li>5. 통계작성의 대상</li> <li>6. 통계작성의 주기</li> <li>7. 통계작성의 방법</li> </ol> <p>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09.7.1, 2015.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의 명칭 및 종류</li> <li>2. 통계의 작성 목적</li> <li>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li> <li>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li> <li>6. 통계작성의 방법</li> <li>7. 자료수집 체계</li> <li>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li> <li>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li> </ol> <p>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p>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문	시 행 령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시·도(시·군·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폐지하는 조례와 규칙
5.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도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8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2. ○○시·도(시·군·구)의회 의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
3.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 등 현장 활동가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법 14조에 따라  
소속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법 제5조의 대상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 고용노동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높이고,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횟수 확대 추진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의안번호 1913393호)



• 화재로 인한 흉터장해  
보험금 지급한도 남녀 차이  
여성 3,200만원  
Vs  
남성 1,000만원

#### 금융위원회

교육시설,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흉터장해 보험금 지급 한도액 남녀차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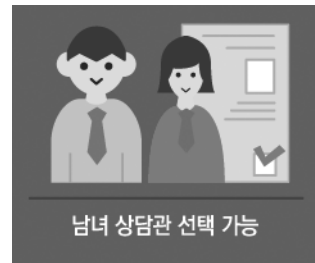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 3,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3호 [별표2]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2015년 하반기 개정 예정)

#### 서울시 강동구

이혼, 가정폭력 등을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같은 성(性)의 상담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서울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4.10.15., 조례 제1109호)



주민등록이 안된 결혼이주여성  
공공안전후조리원이용 불가

#### 경기도

공공안전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선하여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공공안전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경기도 공공안전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4.7.11., 조례 제4772호)



##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사례

구분	평가 전	평가 후
법령	<b>&lt;「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 개성공단 남한근로자에게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지원&gt;</b>	
	개성공단 남한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미적용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 :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규정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이 법 제15조 6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
법령	<b>&lt;「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gt;</b>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있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일방(특히 여성배우자)은 제외되고, 부부 공동명의로도 임차 불가	•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개선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 2015.7.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6조제1항2호가목)
정책	<b>&lt;정부연구개발(R&amp;D)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미래창조과학부) : 정부R&amp;D사업에 여성과학자 참여 확대&gt;</b>	
	정부연구비 예산규모가 큰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여성 참여율이 낮고, 정부 R&D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과제수행 기회에서 성별 격차 발생	정부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분석(Gender Analysis)*'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성분석 : 연구실험대상이 성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성별 특성과 차이를 연구에 반영, 분석
정책	<b>&lt;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성별특성 반영&gt;</b>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의 성별 특성 부족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권고

## 4

##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2015.12. 기준)

## □ 중앙행정기관(2016년 수립예정 계획)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1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3년
2	국방부	군보건의료발전계획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4년
3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5년
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5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5조	5년
6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	10년
7	국토교통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1조	5년
8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제23조	20년
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	5년
10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9년
11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5년
12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기상법 제5조	5년
13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	5년
1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5년
15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말산업육성법 제5조	5년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16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5년
1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18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제6조	5년
19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발전기본계획	국어기본법 제6조	5년
20	문화체육관광부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2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5조	5년
2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	5년
23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진흥계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4조	5년
24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원자력진흥법 제9조	5년
25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진흥법 제9조	5년
26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5년
27	보건복지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정신보건법 제4조의3	5년
28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10년
2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5년
30	보건복지부	효행장려기본계획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31	산림청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산림보호법 제28조	5년
32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본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본계획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5년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법 제11조	5년
35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조	5년
3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37	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 기본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제6조	5년
38	국민안전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5년
39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3년
40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년
41	해양수산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	5년
42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기본계획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5년
43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5년
44	해양수산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5년
45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한 종장기 보전대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5년
46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5년
47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48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5년
49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5년

## □ 광역자치단체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년	
2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10년	
3	광역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2조	5년	
4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년마다, 10년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특별시장 제외
6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	5년	
7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5년	관계광역시장, 도지사
8	산림교육지역계획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5년	
10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장기계획	산림보호법 제20조	10년	
11	지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산림보호법 제45조의2	5년	
12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시	
13	시도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14	지역별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0년	
15	지역산림계획	산림기본법 제11조	10년	
16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5년	
17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5년	
1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5년	
19	경관계획	경관법 제6조	조례 명기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2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	5년	특별자치 도지사 제외
21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10년	
22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5년	
2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	5년	
24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5년	도지사 제외
25	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13조	20년	특별, 광역시장 제외
26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0년	
27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20년	도지사 제외
28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29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5년	
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10년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년	
32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2조	5년	
33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3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20년	도지사 제외
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36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	10년	
37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38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도지사 제외
39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도지사 제외
41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4년	
42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0년	
43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0년	
44	산업입지수급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0년	
45	산지관리지역계획	산지관리법 제3조의2	10년	
46	소기업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3년	
4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10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48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	10년	도지사 제외
49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법 제6조	5년	
50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5년	
51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10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52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5년	
53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 제7조	5년	
54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56	모지 등의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5년	
57	시도주택종합계획	주택법 제8조	10년	
58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5년	
59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60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9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61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4년	
6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제6조의2	10년	
63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5년	
64	토양보전지역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10년	
65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9조	10년	
6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20년	도지사 제외
67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5년	
6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5년	
69	시도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3	10년	

## □ 기초자치단체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	기초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2조	5년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년마다, 10년간	(부여, 공주, 경주, 익산)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특별시 자치구 제외
4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개선지구
6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5년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장
7	경관계획	경관법 제6조	조례 명기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8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0년	
9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1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10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5년	구청장 제외
11	공중 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1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	5년	
13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14	광역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0년	구청장 제외
15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20년	구청장 제외
16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년	구청장 제외
17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5년	
1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10년	특별시의 자치구 제외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년	
20	도로정비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5년	군수만 해당
21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2조	5년	시장
22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2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20년	구청장 제외
24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10년	구청장 제외
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0년	군수, 구청장 제외
26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7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9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4년	
30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0년	
31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0년	
3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10년	
33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	1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34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5년	
35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10년	
36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5년	
37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년	구청장 제외
3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3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5년	구청장 제외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41	묘지 등의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5년	
42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년	
43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44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9조	10년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만 해당
45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4년	
46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제6조의2	10년	
47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5년	구청장 제외
48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2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49	시군구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10년	

## □ 시·도교육청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주기
1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 가. 국내 사이트

-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구축한 성인지 통계 정보 포털.

본 시스템은 기존 통계를 영역별로 재정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를 성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성인지 통계DB(<http://gsis2.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지역 성인지 통계DB.

본 DB는 지역 성인지 통계뿐 아니라 도표로 보는 지역 성인지 통계, 지도로 찾아가는 지역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에 접근할 수 있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내외 주요 통계를 영역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통계간행물, 유치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정책통계, 교육예측통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HOME>정책자료>통계자료 : 여성가족부 승인통계, 성차별, 성폭력 등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함

## 나. 국외 사이트

- UNECE Gender Statistics Website(<http://www.unece.org/stats/gende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회원국 통계청과 연합하여 개발한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 Gender Stats(<http://www.worldbank.org/genderstats>)  
 World Bank가 운영하는 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국가 통계와 UN 데이터베이스, World Bank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회조사 내용들을 제공함
- OECD SIGI(<http://www.genderindex.org>)  
 OECD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양성평등의 이론적 개념, 경험적 근거 및 정책적 측면 등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특히 통계와 측정도구에 초점을 둠
- UN WOMEN(<http://www.unwomen.org>)  
 UN의 여성정책 통합사이트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UN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함
- UNSD(<http://unstats.un.org>)  
 UN 통계처 사이트로 UN의 여성과 남성 관련 사회지표 등 UN 통계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책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인 강은희  
발행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02)2100-6172~78  
팩 스 (02)2100-6482  
홈페이지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인쇄처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

